

재입국 허가(간주 재입국 허가 포함)로 출국하시는 외국인 분들에게

상륙 신청일전 14일 이내에, 외무성 및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하고 있는, 미즈기와대책상 특별히 대응해야 할 코로나19 변이주 등에 대한 지정국·지역(주1) 가운데, 재입국이 원칙적으로 거부되는 대상의 국가·지역에 체재력이 있는 재류자격 보유자의 재입국은, 특별한 사정(주 2)이 없는 한 거부하고 있습니다.

(주1) 외무성 및 후생노동성에서 미즈기와대책상 특별히 대응해야 할 코로나19 변이주 등 지정국·지역으로 지정된 국가·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해 주십시오. (일본어)



<http://www.moj.go.jp/isa/content/001348857.pdf>

(주2)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HP를 참조해 주십시오. (일본어)



【재입국재류관리청HP】<http://www.moj.go.jp/isa/content/001347330.pdf>

(주 3) 「특별 영주자」에 대해서는, 이번 재입국 거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